

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㉠

2021년 12월 28일

국 무 총 리 김 부 겸

국 무 위 원  
법 무 부 장 관 박 범 계

● **법률 제18653호**

**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**

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”을 “해양경찰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해양경찰청”을 “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경찰청 차장 및 해양경찰청 차장”을 “경찰청 차장,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경찰청 및 해양경찰청”을 “경찰청,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·운영되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◇ 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, 신속·공정·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.

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, 공소 등 형사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.

이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